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정관 제37조제 1항, 제2항에 의거하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체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목적) 위원회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로 규정하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4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본회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1.)

제5조(위원회별 기능)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공통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이사회로부터 위임에 관한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개정 2021. 12. 2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2. 이사회 운영 및 조직개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개정 2021. 12. 21.)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채용 등), 단 기본방침은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2. 직원 외 채용 및 승진에 관한사항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④ 경기력 향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종합적 경기력 향상의 관한사항 (개정 2021. 12. 21.)

2. 스포츠 과학 연구 발전에 관한사항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기타 경기력 향상에 관한사항

⑤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1.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2. 그 밖에 생활체육에 관한사항 (신설 2021. 12. 21.)

⑥ 체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읍·면·동 지역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항

2. 읍·면·동 지역 체육대회 운영에 관한사항

3. 시민의 날 체육 행사와 관련한 사항

⑦ 학교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1.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신설 2021. 12. 21.)

2. 체육 영재 발굴 사항에 관한 협조사항 (신설 2021. 12. 21.)

3. 학교체육행사에 관한사항 (신설 2021. 12. 21.)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사항 (신설 2021. 12. 21.)

제6조(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 12. 21.)

④ 위원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유고시 담당 팀장이 간사 직무를 본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에 통보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임원의 임기(4년)와 동일하며 임원직을 사임하였을 경우 위원장과 위원직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삭제 (2021. 12. 21.)

② 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부의 안건 및 절차)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부의 안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통지) ① 간사는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며 회의 계획 5일전까지 위원회 및 관계자에게 부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및 의안 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위원회에 제출된 부의 안건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해당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결의로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위원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의결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소관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② 간사는 필요한 경우 의사록 내용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재심요구) 위원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요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장이 그 집행을 유고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급) 위원회별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관련)

위 축 장

주 소
성 명

우리시 체육회의 주요시책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심의·자문을
구하고자 귀하를 남양주시 체육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관련)

부의안

의안번호	제 호	안건종류	<input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제안부서		제 안 자	
건 명			
1. 의결주문 :			
2. 부의근거 :			
3. 제안사유 :			
4. 주요골자 :			
5. 참고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 관련)

제 회 〇〇 위원회 소집 통지

수신 : 귀하

다음과 같이 〇〇 위원회를 소집 통지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의안사항 :

의안번호	의안제목	제안자	소관부서

4. 의안내용 : 별첨. 끝.

20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14조 관련)

제○회 ○○ 위원회 서면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함이 있어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 하고자 하오니 부의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바랍니다.

첨 부 : 부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장 (인)

부의안에 대한 의견

의안번호 :

찬 성	불 찬 성	부가의견

20 . . .

성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5조 관련)

제○회 ○○위원회 의결서

남양주시체육회

일 시		장 소	
소 관 부 서		제 안 자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내 용	비 고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제15조 관련)

○○ 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 귀하

제○회 ○○위원회(. .)에 부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원안의결, 수정, 부결, 보류)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사 항	비 고

첨 부 : 관련안건 각 1부. 끝.

남양주시체육회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 관련)

○○위원회 회의록

제 회 위원회 회의록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제○회 ○○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상황

재 적 임 원			출 석 임 원		
계	위원장	위 원	계	위원장	위 원

※ 불참임원 :

4. 위원장 :
5. 기록자 :

위원장이 제○회 ○○○개회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하다.

별첨 : 의결서 1부.

20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